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24. 2012가단49376]



【전문】

【원 고】

【피고】

【변론종결】2013. 8. 20.

【주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1. 인정사실

- 가.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콜서비스 제공
- (1) 원고들은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들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다.
- (2) 광주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2008. 2. 13.경 '광주시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위원회(한편 추진위원회 정관 제 1조에 따르면 그 명칭을 'GJ 콜센타 운영위원회'라 고 정하고 있는바, 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결성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08. 2. 19. 주식회사 인솔라인(이하 '인솔라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콜 관제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인솔라인이 제공한 콜 관제시스템을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이라고만 한다).
- (3)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콜장비를 가입회원들의 차량에 장착하였고, 2008. 4. 30. 광주시 브랜드택시 GJ콜센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들도 그 무렵부터 2010. 7월경까지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 나.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
 - (1) 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콜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콜 서비스 제공자(지제이콜)가 고객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한다.

차량배차 방식에는 고객과 최적조건의 차량에 강제배차 하는 방식의 지정배차와 일정 반경 내의 차량에 있는 모든 차량에 배차 요청을 하여 승인 요청을 하는 차량 중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경쟁배차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신속한 배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에서는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 집한 후 그 데이터를 KT IDC 센터에 있는 메인서버에 저장하여,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 이미 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문자를 전송한다.
 - (3) 인솔라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은 택시미터기 연동 타코자료 자동 보관 및 관리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법인택시의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집·보관하여야 하는 타코자료를 택시 운행 시작 또는 종료시 자동으로 메인서버로 전송하여 관리·보관하여 주는 기능이다.

주식회사 지제이콜의 설립 및 콜 서비스 제공

- 2008. 6월 초경 추진위원회의 일부 회원들은 콜장비 구입에 따른 세금처리 및 추후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지에이콜서비스(이하 '주식회사 지제이콜'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8. 6. 25. 피고 2를 대표 이사로 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콜 서비스 회원들에게 택시 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
- 라. 피고 1 및 피고 2의 위치정보 수집 등

다.

- (1) 피고 1과 피고 2는 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피고 1은 광주택시 주식회사(이하 '광주택시'라고만 한다)의 전무이다.
- (2) 광주택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지제이콜은 광주시 (주소 생략)에 소재한 동일 건물의 1, 2층을 각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인솔라인은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설치 무렵 광주택시 주식회사 측의 요청으로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이사건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광주택시 주식회사 사무실 컴퓨터까지 연결선을 설치하고 광주택시 주식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의 구동 현황을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광주택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구동시 모니터에 현출되는 모든 회원들의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후, 인솔라인은 2010. 7월경부터 더 이상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 서비스 가입 회원들의 차량 위치를 볼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마. 피고 1의 형사처벌

- 피고 1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4월 초순경부터 2010. 7월 말경까지 광주시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 관제센터 프로그램(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도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주시 개인택시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개인택시의 위치정보(택시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를 수집하였다.
- 」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이 법원 2012. 8. 13.자 2012고약6143호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9. 27. 확정되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1. 인정사실

- 가.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콜서비스 제공
- (1) 원고들은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들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다.
- (2) 광주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2008. 2. 13.경 '광주시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위원회(한편 추진위원회 정관 제 1조에 따르면 그 명칭을 'GJ 콜센타 운영위원회'라 고 정하고 있는바, 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결성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08. 2. 19. 주식회사 인솔라인(이하 '인솔라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콜 관제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인솔라인이 제공한 콜 관제시스템을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이라고만 한다).
- (3)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콜장비를 가입회원들의 차량에 장착하였고, 2008. 4. 30. 광주시 브랜드택시 GJ콜센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들도 그 무렵부터 2010. 7월경까지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의 구조 및 특징

(1) 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콜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콜 서비스 제공자(지제이콜)가 고객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한다.

차량배차 방식에는 고객과 최적조건의 차량에 강제배차 하는 방식의 지정배차와 일정 반경 내의 차량에 있는 모든 차량에 배차 요청을 하여 승인 요청을 하는 차량 중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경쟁배차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 (2) 신속한 배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에서는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 집한 후 그 데이터를 KT IDC 센터에 있는 메인서버에 저장하여,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 이미 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문자를 전송한다.
 - (3) 인솔라인이 제공하는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은 택시미터기 연동 타코자료 자동 보관 및 관리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법인택시의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집·보관하여야 하는 타코자료를 택시 운행 시작 또는 종료시 자동으로 메인서버로 전송하여 관리·보관하여 주는 기능이다.

다.

주식회사 지제이콜의 설립 및 콜 서비스 제공

2008. 6월 초경 추진위원회의 일부 회원들은 콜장비 구입에 따른 세금처리 및 추후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지에이콜서비스(이하 '주식회사 지제이콜'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8. 6. 25. 피고 2를 대표 이사로 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콜 서비스 회원들에게 택시 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라. 피고 1 및 피고 2의 위치정보 수집 등
- (1) 피고 1과 피고 2는 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피고 1은 광주택시 주식회사(이하 '광주택시'라고만 한다)의 전무이다.
- (2) 광주택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지제이콜은 광주시 (주소 생략)에 소재한 동일 건물의 1, 2층을 각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인솔라인은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설치 무렵 광주택시 주식회사 측의 요청으로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이사건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광주택시 주식회사 사무실 컴퓨터까지 연결선을 설치하고 광주택시 주식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의 구동 현황을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광주택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사건 콜 관제시스템 구동시 모니터에 현출되는 모든 회원들의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후, 인솔라인은 2010. 7월경부터 더 이상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 서비스 가입 회원들의 차량 위치를 볼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마. 피고 1의 형사처벌

- 피고 1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4월 초순경부터 2010. 7월 말경까지 광주시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광주택시 사무실에서 콜 관제센터 프로그램(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도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주시 개인택시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개인택시의 위치정보(택시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를 수집하였다.
- 」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이 법원 2012. 8. 13.자 2012고약6143호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9. 27. 확정되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